

#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 형 재 의원입니다.

송도호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30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관련 상위법인 「물환경보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 용조항 번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 근거조항 을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8항에서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9항 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 
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 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